

# 정정신고(보고)

2017년 1월 11일

## 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배당플러스30증권투자신탁Ⅱ 제2호[채권혼합]

## 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04. 17

## 3. 정정 내용 :

- 이익분배 조항 변경 등

## 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표지	작성기준일 : 2016. 12.26	작성기준일 : 2017.1.11
요약정보	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(1)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 - 4. 투자실적 -	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(1)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 <b>업데이트</b> 4. 투자실적 <b>업데이트</b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가. 운용전문인력 현황 -	가. 운용전문인력 현황 <b>업데이트</b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가. 이익배분 (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"零(0)"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	가. 이익배분 (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"零"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1)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2)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※ 펀드내 자산의 평가·매매차익의 결산·분배금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	유보로 인해 과세가 자동이월되면서, 환매 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(2,00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	업데이트